

원폭 국제 민중 법정을 위한 제 2 차 국제 토론회  
국제 조직 위원회를 구성을 위한 패널 토론에서의 발언

주최자 여러분의 귀중한 활동에 감사 드리며 발언 기회도 주셔서 고맙습니다.

1945 년 8 월의 미국의 핵무기 투하 위법성을 재판하는 민중 법정 프로젝트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피폭자와 함께 핵무기의 비인도성을 호소해 온 피스보트 활동이나 핵무기 금지조약의 보편화를 요구하는 ICAN 의 활동과 많은 부분이 겹칩니다.

다른 한편으로 민중법정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시민 운동의 관점에서 몇 가지 극복해야 할 과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학술적, 법적 관점이라기보다는 정치적 혹은 사회적 관점에서 말입니다.

첫째, 이 민중 법정은 미국의 원폭투하의 책임을 묻는 것이 주요 사안입니다만 이 프로젝트로 일본 정부의 책임을 어떻게 물을 수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일본의 피폭자 운동은 1950 년대 이후 일관되게 일본 정부의 피폭자에 대한 국가 보상과 핵무기 폐지라는 두가지를 요구해 왔습니다. 이는 일본 정부에게 전쟁을 시작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국가 보상 요구는 아직도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일본에는 피폭자에 대한 의료지원과 수당 등 다양한 원호 시책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어디까지나 사회 서비스이지 법적인 배상은 아니라는 것이 정부의 생각입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고, 오늘도 일본의 피폭자는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피폭자 여러분은 미국의 원폭투하의 피해자인 동시에 일본 식민지 지배의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일본 정부의 책임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물론 일본 정부의 책임을 미루고 미국의 범죄 행위를 추궁하는 데 집중하는 것도 하나의 운동론으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캠페인은 일본에서도 많은 지지를 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제 2 차 세계대전의 피해자는 일본이었다'는 식의 의식을 넓혀 일본의 내셔널리즘을 잘못된 형태로 조장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굳이 위험성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일본의 내셔널리즘은 아시아에서 전쟁을 반복하지 않게 하려는 우리의 공통된 바람에 역효과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일본의 피폭자도, 한국의 피폭자도 똑같이 미국의 원폭투하 피해자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피폭자 여러분이 민중 법정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는 앞으로 일본의 피폭자 단체와의 면밀한 협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1945 년 원폭투하의 위법성을 묻는 것과 오늘날 핵무기 폐지 활동과의 관계에 대해서입니다.

원폭투하의 범죄성을 논의하는 것은 오늘날 핵 억제론의 부당성을 밝히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한편, 예를 들어 미국 지도층의 토론 속에는 원폭탄 투하는 어쩔 수 없었지만 오늘날에는 핵무기는 불필요하며 그 위험성에 비추어 폐지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을 핵무기 폐지 운동에서 동료로 볼 것인가, 설득하고 생각을 바꾸게 할 상대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8년 전 미국 현직 대통령으로 처음 히로시마를 방문한 버락 오바마에 대해 히로시마는 사죄를 요구할 것인가, 요구하지 않을 것인가 하는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복잡한 사고와 감정이 뒤섞인 논쟁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히로시마는 공식적으로는 사죄를 요구하지 않았고 오바마 대통령도 물론 사죄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가 히로시마를 방문해 핵무기 폐지 목표를 말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견해가 제가 이해하는 한 다수파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사죄하기를 원했던 사람도 결코 적지 않습니다.

원자폭탄 투하의 위법성과 사죄에 중점을 둔 운동은 이러한 피폭지의 복잡한 여론을 어떻게 마주할 것인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2021년 발효된 핵무기 금지 조약과의 관계입니다. 이 조약에는 핵무기 사용·실험으로 인한 피해자를 원조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내년 제3차 당사국 총회에 대비해 피해자 지원을 위한 국제신탁기금을 만들자는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이 조약에서의 피해자 원조 규정은 조약 체결국에 핵 피해자가 생활하고 있는 경우, 근본적으로는 체결국 정부가 피해자를 원조할 의무를 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국제 협력 제도를 만들어 해당 정부를 국제적으로 지원하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이 이 조약에 가입하면 한국 정부는 자국 내에 있는 피폭자를 지원할 법적 의무를 지게 됩니다.

왜 핵무기를 사용하고 실험한 나라에 직접 책임을 묻지 않는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가 더 현실적입니다. 핵무기를 사용·실험한 나라는 이 조약에 자진해서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들어오기를 느긋하게 기다릴 것이 아니라 눈앞에 피해자가 있는 이상, 우선 구제하고 이를 위해 국제사회가 협력하자는 접근법입니다. 핵무기를 사용·실험한 나라에는 국제 협력 참가를 요구해 나갑니다.

피폭자도 핵실험 피해자도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그들을 현실적으로 구제하는 제도 마련에 지금 국제적인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에 보상을 요구하는 민중법정의 운동이 이러한 핵무기 금지 조약 대처와 어떻게 관계를 구축해 갈 것인가 하는 점도 향후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와사키 아키라 (ICAN 국제운영위원, 피스보트 공동대표) 2024년 6월 7일